



의안번호	제 2020 - 19호
보 고 연 월 일	2020. 7. 13. (제103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목 차

I. 제134차 전체회의	1
1. 일시·장소	1
2. 참석자(12명)	1
3. 주요 안건	1
II.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3개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 2	
1. 양형위원회 논의 경과	2
2. 관련 법률	5
3. 양형자료조사 결과	9
4. 양형기준 설정 범위 검토 결과	11
5. 유형 분류 방안 검토 결과	16
III. 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	24
1. 개관	24
2. 특정범죄가중법 개정 내용	24
3.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검토 결과 ⇨ 의견 일치	25
4. 권고 형량범위 검토 결과	26
5.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검토 결과	30
IV.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	34
1. 개관	34
2. 법률 개정 내용	35
3.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검토 결과 ⇨ 의견 일치	40
4. 권고 형량범위 검토 결과	47
5. 양형 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검토 결과 ⇨ 의견 일치	62
V. 향후 일정	63

【별첨】

- 백광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범위 및 유형 분류”
 - 김춘수, 유관모,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재검토 I](적용범위 및 유형분류)”
 - 백광균, “마약, 강도 범죄 양형기준 수정”
 - 김춘수, 유관모, “마약범죄 · 강도범죄 양형기준(형량범위) 검토”
-

I. 제134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20. 6. 29.(월) 15:30 ~ 18: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12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춘수, 김희연, 박성훈, 백광균, 유관모, 이형일, 최승원, 최준혁, 한상규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김혜경, 범현 전문위원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3개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방안
- 「강도범죄」,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 방안

II.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3개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1. 양형위원회 논의 경과¹⁾

가. 제95차 정기회의(2019. 6. 10.)

-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제7기 양형위원회 전반기에 설정 작업을 진행하기로 의결

나. 제96차 정기회의(2019. 9. 9.)

(1) 설정 범위

- ①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다음부터 ‘성폭력처벌법’으로 약칭) 제13조], ② 카메라 등이용촬영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를 설정 범위에 포함
-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²⁾[‘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약칭) 제11조], ② 음란물유포 범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정보통신망법’으로 약칭)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설정 범위에서 제외

(2) 유형 분류

1)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에 한정함.

2) 개정 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임. 이하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상 용어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로만 표시함.

- 독립 범죄군으로 설정하되, 범죄군 명칭은 추후 결정
- 제1 대유형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하고, 촬영 범죄, 반포 등 범죄를 각각 별개의 소유형으로 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촬영			
2	반포 등			

- 제2 대유형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로 하고, 별도의 소유형을 두지 않음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통신매체이용음란			

다. 제98차 정기회의(2019. 12. 9.)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를 설정 범위에 포함하되,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각 항 중 어느 범위까지 설정할 것인지는 전문위원단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

라. 제100차 정기회의(2020. 2. 17.)

(1) 설정 범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중 알선 범죄(제4항)를 제외한 ① 제작 등 범죄(제1항), ②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범죄(제2항), ③ 배포 등 범죄(제3항), ④ 소지 범죄(제5항)를 설정 범위에 포함

(2) 유형 분류

-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와 함께 하나의 범죄군에 포함하되,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소유형을 아래와 같이 분류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작 등			
2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3	배포 등			
4	소지			

마. 제101차 정기회의(2020. 4. 20.)

- 범죄군 명칭의 결정은 일단 보류하고, 대유형을 ‘제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제2.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제3.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의 순서로 함

바. 제102차 정기회의(2020. 5. 18.)

-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을 반영하여 전문위원단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3개 범죄의 양형기준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 후 ① 제103차 정기회의(2020. 7. 13.)에서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안을, ② 제104차 정기회의(2020. 9. 14.)에서 형량범위,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안을 각각 심의하기로 함

2. 관련 법률

가. 청소년성보호법

○ 2020. 6. 2. 개정 법률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2조(정의)</p> <p>5. "<u>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u>"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p>	<p>제2조(정의)</p> <p>5. "<u>아동·청소년성착취물</u>"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p>
<p>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p> <p>① <u>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u>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② 영리를 목적으로 <u>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u>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u>소지·운반</u>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u>10년 이하</u>의 징역에 처한다.</p> <p>③ <u>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u>을 <u>배포·제공</u>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u>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p> <p>④ <u>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u>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p>	<p>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p> <p>① <u>아동·청소년성착취물</u>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② 영리를 목적으로 <u>아동·청소년성착취물</u>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u>소지·운반·광고·소개</u>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u>5년 이상</u>의 징역에 처한다.</p> <p>③ <u>아동·청소년성착취물</u>을 <u>배포·제공</u>하거나 <u>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u>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u>3년 이상의 징역</u>에 처한다.</p> <p>④ <u>아동·청소년성착취물</u>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p>

개정 전	개정 후
<p><u>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u>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⑤ <u>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u>임을 알면서 이를 <u>소지</u>한 자는 <u>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p> <p>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⑦ <신 설></p>	<p><u>아동·청소년성착취물</u>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⑤ <u>아동·청소년성착취물</u>을 구입하거나 <u>아동·청소년성착취물</u>임을 알면서 이를 <u>소지·시청</u>한 자는 <u>1년 이상의 징역</u>에 처한다.</p> <p>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⑦ <u>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p>

나. 성폭력처벌법

○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2020. 5. 19. 개정 법률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2020. 5. 19. 개정 법률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p>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p>	<p>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p>

개정 전	개정 후
<p>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④ <신 설></p> <p>⑤ <신 설></p>	<p>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p> <p>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p>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2020. 5. 19. 및 2020. 6. 25.

신설 시행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2020. 5. 19. 신설 시행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3. 양형자료조사 결과3)

가. 양형자료조사 대상

- 2014. 1. 1.~2018. 12. 31. 제1심 단일 범죄, 피고인 기준 징역형 선고 총 1,891건(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범죄 68건을 제외하면 1,823건)

단위: 명, %

디지털 성범죄 유형	수	비율
카메라등이용촬영	1,577	83.4
통신매체이용음란	196	10.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50	2.6
전체	1,823	96.4⁴⁾

나. 유형별 분포

단위: 명, %

범죄유형			선고연도							전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카메라등 이용촬영	촬영	수	-	-	171	260	345	386	396	1,558
		비율	-	-	11.0	16.7	22.1	24.8	25.4	100.0
	유포	수	-	-	1	1	5	8	4	19
		비율	-	-	5.3	5.3	26.3	42.1	21.1	100.0
	소계	수	-	-	172	261	350	394	400	1,577
		비율	-	-	10.9	16.6	22.2	25.0	25.4	100.0
통신매체이용음란		수	-	-	45	44	36	36	35	196
		비율	-	-	23.0	22.4	18.4	18.4	17.9	100.0
아동·청 소년성착 취물	청소년성보호법위반 11조 1항	수	0	1	2	2	3	7	0	15
		비율	0.0	6.7	13.3	13.3	20.0	46.7	0.0	100.0
	청소년성보호법위반 11조 2항	수	12	7	1	4	3	3	1	31
		비율	38.7	22.6	3.2	12.9	9.7	9.7	3.2	100.0

3) 제7기 양형기준 대상범죄분석 I(운영지원단).

4)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범죄가 3.4%를 차지함.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이 작성한 제7기 양형기준 대상범죄분석 I에 나타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범죄를 제외한 비율을 따로 산정하지 않았음.

단위: 명, %

범죄유형		선고연도							전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청소년성보호법위반 11조 3항	수	0	0	1	1	1	0	1	4
	비율	0.0	0.0	25.0	25.0	25.0	0.0	25.0	100.0
소계	수	12	8	4	7	7	10	2	50
	비율	24.0	16.0	8.0	14.0	14.0	20.0	4.0	100.0

다. 선고 내역

단위: 명, %

범죄유형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	수	242	1,316	1,558
		비율	15.5	84.5	100.0
	유포	수	6	13	19
		비율	31.6	68.4	100.0
	소계	수	248	1,329	1,577
		비율	15.7	84.3	100.0
통신매체이용 음란	성폭력처벌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수	43	153	196
		비율	21.9	78.1	100.0
	소계	수	43	153	196
		비율	21.9	78.1	100.0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청소년성보호법위반 11조 1항	수	3	12	15
		비율	20.0	80.0	100.0
	청소년성보호법위반 11조 2항	수	3	28	31
		비율	9.7	90.3	100.0
	청소년성보호법위반 11조 3항	수	0	4	4
		비율	0.0	100.0	100.0
	소계	수	6	44	50
		비율	12.0	88.0	100.0

4. 양형기준 설정 범위 검토 결과

가. 의견이 일치된 부분

-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중 제작 등(제1항), 영리 목적 판매 등(제2항), 배포 등(제3항), 아동·청소년 알선(제4항) 범죄, 상습 제작 등(제7항) 범죄 ② 카메라등 이용촬영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③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를 설정 범위에 포함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중 미수(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6항)는 설정 범위에서 제외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 개정 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제작 등), 제2항(영리 목적 판매 등), 제3항(배포 등)을 설정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이미 의결하였고,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으로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상향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외할 이유 없음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4항(아동·청소년 알선)의 경우 원래 양형사례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설정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의결. 그러나 양형기준의 체제 정합성, 성매매범죄의 양형기준 중 성매매의 알선에 관한 양형인자의 참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4항도 설정 범위에 포함함이 타당
- 신설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7항(상습 제작 등)은 제1항(제작 등)의 범죄에 대하여 상습을 이유로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설정 범위에 포함함이 타당

-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6항(미수 처벌 규정)의 경우 살인범죄 외에 아직까지 미수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한 사례가 없고, 다양한 미수 범죄의 행위 태양 또는 법익 침해 정도를 양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외

(2)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 개정 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촬영), 제2항(반포 등), 제3항(영리 목적 반포 등)을 설정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이미 의결하였고,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상향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외할 이유 없음
-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소지 등)의 경우 소지 등 범죄의 양형에 관한 국민적 관심의 정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범죄에 대한 기존 양형사례의 참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범위에 포함함이 타당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위헌 논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상습 촬영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에 대하여 상습을 이유로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설정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3)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

- 개정 전 성폭력처벌법 제13조를 설정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이미 의결하였고,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벌금형의 상한이 상향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외할 이유 없음

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1) 요약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중 구입 등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 포함(다수 의견, 7인)

- 제외(소수 의견, 4인)

②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포함(제1 의견, 6인)

- 제외(제2 의견, 5인)

③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포함(제1 의견, 6인)

- 제외(제2 의견, 5인)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중 구입 등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가) 포함하자는 견해(다수 의견, 7인)

○ 개정 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소지)의 범죄를 설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의결하였음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요자를 엄벌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소지뿐 아니라 구입, 시청 행위도 처벌하고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였는데, 이를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구성요건 행위가 '소지' 외에 '구입', '시청'으로 확대되었지만, 유사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나 양형인자 등을 참고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나) 제외하자는 견해(소수 의견, 4인)

-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징역'으로 크게 바뀌었으므로, 양형사례가 어느 정도 축적된 후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구성요건 행위에 '시청'이 추가되어 단순 시청의 경우에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으로 처벌됨. 그런데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법관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고,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설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음

(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가) 포함하자는 견해(제1 의견, 6인)

- 종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와 법정형이 유사하므로 그에 준하여 형량범위를 정할 수 있고,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와 행위 태양이 유사하여 양형인자를 추출하는 데에도 큰 문제가 없음
-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심각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임. 비록 신설되어 양형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범죄라 하더라도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이 범죄로 기소된 사건을 담당할 법관에게 형량범위, 양형인자 등을 안내 또는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함

(나) 제외하자는 견해(제2 의견, 5인)

- 종전에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신설 조항에 대한 양형기준의 설정은 규범적 접근방식에 의존하게 되므로 양형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그 결과 양형기준의 규범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범위에서만 허용되어야 함
- 양형사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① 어느 범위까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② 전형적인 범죄의 유형은 어떠한지, ③ 다양한 행위 태양 중 가벌성과 비난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것이 무엇인지 등을 도출하기가 매우 어려움

(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가) 포함하자는 견해(제1 의견, 6인)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와는 달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이미 협박·강요 범죄로 처벌되고 있었음. 따라서 양형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권고 형량범위 설정이나 양형인자 추출에 큰 어려움이 없음
- 처벌 규정이 성폭력처벌법에 존재하고, 범행의 수단으로 불법 신체 촬영물 등이 사용되었다는 데 주목하여 일반적인 협박·강요 범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만큼, 기존의 폭력 범죄나 권리행사방해 범죄의 양형기준에 추후 추가하는 방식보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에 포함시켜 함께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제외하자는 견해(제2 의견, 5인)

- 유사 범죄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법정형이 매우 높으므로 일단 양형사례의 축적을 기다릴 필요가 있음
- 이 범죄의 본질은 협박, 강요 행위이므로, 추후 협박, 강요에 대한 양형기준의 수정을 통하여(특별가중인자로 취급하거나 별도 유형으로 신설) 해당 범죄군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5. 유형 분류 방안 검토 결과

가. 유형 분류의 일반 원칙

- 유사한 속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 내에 포함시켜야 함
- 개별 범죄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해당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유형에 속한 범죄들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들은 공통되어야 함

나. 범죄군의 구별 여부

(1) 하나의 범죄군으로 설정하자는 견해(다수 의견, 10인)

- 양형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 카메라등이용 촬영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를 하나의 범죄군으로 묶어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의결하였고, 이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2) 두 개의 범죄군으로 구별하자는 견해(소수 의견, 1인)

- 설정 대상 범죄의 확대에 맞추어 범죄군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 보호법익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와 구별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가 갖는 특수성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향후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같은 관련 처벌규정에 대하여 추가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 별개의 범죄군으로 떼어내어 것이 바람직함
- 범죄군이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와 ② '신체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의 두 개로 구별되어 장기간 논의가 지속되었던 범죄군 명칭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도 기대됨

다. 구체적 유형 분류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

(1) 요약

<p>1.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p> <p>① 의견이 일치된 부분</p> <p>㉠ 제1항(제작 등), 제2항(영리 등 목적 판매 등) 및 제5항(구입 등, 설정대상 포함 시)을 별개의 소유형으로 분류 ☞ 법정형과 행위태양의 차이 감안</p> <p>㉡ 제1항의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제7항은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음 ☞ 추후 특별가중인자 반영, 서술식 기준 추가 등</p>

여러 방안을 검토한 후 보고 예정

②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 제3항(배포 등)과 제4항(알선)의 구분 여부

㉠ 하나의 소유형으로 분류(제1 의견, 6인)

㉡ 별도 소유형으로 분류(제2 의견, 5인)

2.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양형위원회에서 종전에 의결한 대로 대유형으로만 분류하고 별도의 소유형을 두지 않는 데 의견 일치

3.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설정 대상 포함 시)

① 의견이 일치된 부분

㉠ 제14조 제1항(촬영), 제2항(반포 등), 제3항(영리 목적 반포 등), 제4항(소지 등), 제14조의2 제1항(편집 등), 제2항(반포 등), 제3항(영리목적 반포 등)을 별개의 소유형으로 분류 ☞ 법정형과 행위태양의 차이 및 상습범 처벌 조항이 신설된 점 감안

※ 제14조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원래 양형위원회에서 하나의 소유형으로 분류하고 ‘영리 목적’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의결함.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양자의 법정형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생기게 되어(7↓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 v. 3↑ 징역) 하나의 소유형으로 묶기 어렵게 되었음

㉡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제14조 제5항, 제14조의2 제4항)은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음 ☞ 추후 특별가중인자 반영, 서술식 기준 추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 후 보고 예정

②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 제14조와 제14조의2를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 여부

㉠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다수 의견, 7인)

㉡ 하나의 대유형으로 분류(소수 의견, 4인)

4.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설정 대상 포함 시)

별개 대유형으로 분류한 후 ‘협박’ 과 ‘강요’ 의 소유형을 두며, 상습은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지 않는 데 의견 일치

(2) 상세⁵⁾

(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등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와 아동·청소년 알선 범죄(같은 조 제4항) 를 별도 소유형으로 분류할지 여부

① 하나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자는 견해(제1 의견, 6인)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등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와 아동·청소년 알선 범죄(같은 조 제4항)는 법정형이 동일함. 다른 범죄군의 양형기준에서도 행위태양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를 하나의 소유형으로 묶은 사례가 다수 존재함

○ 양자의 권고 형량범위가 특별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고, 두 개의 소유형으로 구분하더라도 결국 하나의 양형인자표와 집행유예 참작사유표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 굳이 두 개의 소유형으로 구분할 실익이 없음

5) 전문위원단의 의견이 일치된 부분은 종전 양형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전문위원단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상세 보고를 함.

■ 제1 의견에 의한 유형 분류안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작 등			
2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3	배포 등 / 아동·청소년 알선			
4	구입 등			

② 별도 소유형으로 분류하자는 견해(제2 의견, 5인)

- 아동·청소년 알선 범죄는 '생성'의 측면, 배포 등 범죄는 '유통'의 측면에 해당하여 양자의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 아동·청소년 알선 범죄는 실존하는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가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알선은 상정할 수 없음. 이러한 측면에서 배포 등 범죄와 성격을 달리하고, 양형인자도 달리 보아야 하는 측면이 있음

■ 제2 의견에 의한 유형 분류안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작 등			
2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3	배포 등			
4	아동·청소년 알선			
5	구입 등			

(나)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를 별도 대유형(또는 중유형)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①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하자는 견해(다수 의견, 7인)

-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와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는 이질적인 요소가 많아, 하나의 대유형으로 분류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 양자를 하나의 대유형으로 묶으면 소유형이 7개에 이르게 되어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불편함이 예상됨

■ 다수 의견에 의한 유형 분류안				
1.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촬영			
2	반포 등			
3	영리 목적 반포 등			
4	소지 등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편집 등			
2	반포 등			
3	영리 목적 반포 등			

② 하나의 대유형으로 분류하자는 견해(소수 의견, 4인)

- 양형기준의 설정 대상이 확대되어 대유형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대유형을 합쳐서 하나의 포로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함

■ 소수 의견에 의한 유형 분류안

1. 카메라등이용촬영/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촬영			
2	반포 등			
3	(카메라등이용촬영) 영리 목적 반포 등			
4	소지 등			
5	허위영상물 등 편집 등			
6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7	(허위영상물 등) 영리 목적 반포 등			

라. 다수의견 또는 제1 의견에 따른 유형 분류

(1) 대유형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작 등			
2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3	배포 등 / 아동·청소년 알선			
4	구입 등			

(2) 대유형 2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촬영			
2	반포 등			
3	영리 목적 반포 등			
4	소지 등			

(3) 대유형 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편집 등			
2	반포 등			
3	영리 목적 반포 등			

(4) 대유형 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협박			
2	강요			

(5) 대유형 5 통신매체이용음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통신매체이용음란			

Ⅲ. 강도범죄 양형기준 수정방안

1. 개관

- 현행 강도범죄의 양형기준은 2009. 4. 24. 의결되어 2009. 7. 1.부터 시행되었고, 2011. 3. 21. 수정을 거쳐 2011. 4. 15.부터 수정된 양형기준이 시행되고 있음
- 그 후 2016. 1. 6. 상습 강도죄 등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특정범죄가중법’으로 약칭) 제5조의4 제3항이 삭제되고,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양형기준 중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수정할 필요 발생
- 양형기준이 2011년에 마지막으로 수정된 이후 9년 이상 경과하여, 현재 시점에서 권고 형량범위가 적정한지, 재검토 대상 양형인자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2. 특정범죄가중법 개정 내용

- 2016. 1. 6. 개정, 시행
- 아래 표에는 같은 조항 내에서도 변경된 부분 및 설정 범위 관련 필요한 부분만 표시

개정 전	개정 후
<p>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p> <p>③ 상습적으로 「형법」 제333조·제334조·제336조·제340조제1항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p>	<p>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p> <p>③ (삭제)</p> <p>⑤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p>

<p>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u></p>	<p>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u></p> <p>2. 「형법」 제333조부터 <u>제336조까지의 죄 및 제340조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u></p>
--	--

○ 개정 요지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3항 :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규정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등 결정)을 함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함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새롭게 처벌 규정을 두되, 그 법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함

3. 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검토 결과 ⇨ 의견 일치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3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이를 설정 범위에서 제외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 제2호가 추가되는 개정이 되었

으므로 이를 반영

- 기존 양형기준 [유형의 정의] 중 수정 필요 부분은 아래와 같음:
삭제 부분은 삭선, 추가 부분은 강조 표시

04¹ 상습·누범강도

구성요건	적용법조
상습으로 강도(미수범 포함),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3항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미수범 포함), 제340조(미수범 포함)의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강도, 특수강도 등을 누범으로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

4. 권고 형량범위 검토 결과

[요약]

① 의견이 일치된 부분

- 현행 양형기준 대유형 1~3까지의 권고 형량범위 유지

②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 현행 양형기준 대유형 4 상습·누범강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향 조정 여부

㉠ 다수 의견(9인) : 현행 유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상습·누범강도	5년 - 8년	6년 - 10년	8년 - 12년

㉡ 소수 의견(2인) : 대유형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와 동일해지도록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상습·누범강도	6년 - 11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상세]

가. 의견이 일치된 부분

(1) 대유형 1 일반적 기준

(가) 통계자료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에서 제공한 2014년부터 2018년 선고사건의 선고형량(굵은 글씨 및 음영 부분은 현행 양형기준 적용 시 권고 형량범위를 준수한 구간을 의미함, 이하 같음)

유형	영역		징역(월)														전체	평균(월)	준수율(%)	이탈율(%)	
			10	12	18	20	24	30	36	42	48	54	60	66	72	84					96
제1 유형	감경	수	3	6	108	1	16	3	10	0	2		0			0		149	20.1	92.6	7.4
		비율	2.0	4.0	72.5	0.7	10.7	2.0	6.7	0.0	1.3		0.0			0.0		100.0			
	기본	수	0	0	14	0	18	3	7	2	2		1			1		48	28.1	66.8	33.2
		비율	0.0	0.0	29.2	0.0	37.5	6.3	14.6	4.2	4.2		2.1			2.1		100.0			
	가중	수	0	0	0	0	2	0	2	0	0		0			0		4	30	50	50
		비율	0.0	0.0	0.0	0.0	50.0	0.0	50.0	0.0	0.0		0.0			0.0		100.0			
합계	수	3	6	122	1	36	6	19	2	4		1			1		201				
	비율	1.5	3.0	60.7	0.5	17.9	3.0	9.5	1.0	2.0		0.5			0.5		100.0				
제2 유형	감경	수			10		10	208	46	7	2	1	3	0	0	0		287	31.1	91.6	8.4
		비율			3.5		3.5	72.5	16.0	2.4	0.7	0.3	1.0	0.0	0.0	0.0		100.0			
	기본	수			0	0	83	88	12	8	1	14	0	2	1			209	36.6	59.8	40.2
		비율			0.0	0.0	39.7	42.1	5.7	3.8	0.5	6.7	0.0	1.0	0.5			100.0			
	가중	수			0	1	6	3	1	1	0	1	1	1	0			15	40	20	80
		비율			0.0	6.7	40.0	20.0	6.7	6.7	0.0	6.7	6.7	6.7	0.0			100.0			
합계	수			10	11	297	137	20	11	2	18	1	3	1			511				
	비율			2.0	2.2	58.1	26.8	3.9	2.2	0.4	3.5	0.2	0.6	0.2			100.0				

(나) 검토 결과 : 현행 유지

- 법정형의 변화가 없고, 가중 영역의 하한 이탈 비율이 상당하
기는 하나 이미 가중 영역 하한이 법정형 하한과 동일하므로
그보다 더 낮게 하한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평균 선고 형량이 기본 영역 범위 내에 있고, 가중 영역에 해
당하는 사례 자체가 적음

(2) 대유형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통계자료

유형			징역(월)													전체	평균 (월)	준수율 (%)	이탈율 (%)	
			21	22	24	30	36	42	48	54	60	72	84	96	108					120
제1유형	감경	수		1	24	10	10	119	12	0	1		2			0	179	39.4	97.8	2.2
		비율		0.6	13.4	5.6	5.6	66.5	6.7	0.0	0.6		1.1			0.0	100.0			
	기본	수		0	0	2	0	35	16	4	1		4			1	63	48	95.2	4.8
		비율		0.0	0.0	3.2	0.0	55.6	25.4	6.3	1.6		6.3			1.6	100.0			
	가중	수		0	0	0	1	1	2	0	2		1			0	7	54	42.9	57.1
		비율		0.0	0.0	0.0	14.3	14.3	28.6	0.0	28.6		14.3			0.0	100.0			
	합계	수		1	24	12	11	155	30	4	4		7			1	249			
		비율		0.4	9.6	4.8	4.4	62.2	12.0	1.6	1.6		2.8			0.4	100.0			
제2유형	감경	수	1		8	5	4	75	22	2	7	1	1	1	0	0	127	43.2	87.4	12.6
		비율	0.8		6.3	3.9	3.1	59.1	17.3	1.6	5.5	0.8	0.8	0.8	0.0	0.0	100.0			
	기본	수	0		0	0	0	14	17	6	7	3	6	2	0	0	55	55.6	70.9	29.1
		비율	0.0		0.0	0.0	0.0	25.5	30.9	10.9	12.7	5.5	10.9	3.6	0.0	0.0	100.0			
	가중	수	0		0	0	1	2	3	0	2	2	5	1	1	1	18	70.6	55.7	44.3
		비율	0.0		0.0	0.0	5.6	11.1	16.7	0.0	11.1	11.1	27.8	5.6	5.6	5.6	100.0			
	합계	수	1		8	5	5	91	42	8	16	6	12	4	1	1	200			
		비율	0.5		4.0	2.5	2.5	45.5	21.0	4.0	8.0	3.0	6.0	2.0	0.5	0.5	100.0			

(나) 검토 결과 : 현행 유지

- 법정형의 변화가 없고, 가중 영역의 하한 이탈 비율이 상당하
나 이미 가중 영역 하한이 법정형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보다

더 낮게 하한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가중 영역에 해당하는 사례 자체가 적어 가중 영역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낮출 필요성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음

(3) 대유형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통계자료

- 감경, 기본 영역에 각 1건 → 모두 징역 10년이 선고

(나) 검토 결과 : 현행 유지

- 법정형의 변화가 없고, 권고 형량 준수율이 100%임

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 대유형 4 상습·누범강도

(가) 통계자료

영역		징역(월)								전체	평균(월)	준수율 (%)	이탈율 (%)
		36	60	72	84	96	108	120	144				
감경	수	1	2	0	0	1	0	1		5	74.4	60	40
	비율	20.0	40.0	0.0	0.0	20.0	0.0	20.0		100.0			
기본	수	0	2	4	2	3	0	3		14	87.4	85.7	14.3
	비율	0.0	14.3	28.6	14.3	21.4	0.0	21.4		100.0			
가중	수	1	0	0	0	0	1	1		3	88	66.6	33.4
	비율	33.3	0.0	0.0	0.0	0.0	33.3	33.3		100.0			
전체	수	2	4	4	2	4	1	5		22			
	비율	9.1	18.2	18.2	9.1	18.2	4.5	22.7		100.0			

(나) 다수 의견(9인) : 현행 유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상습·누범강도	5년 - 8년	6년 - 10년	8년 - 12년

- 이 유형에 해당하는 법률조항 일부(상습강도 등)가 삭제되고, 징역형 3회 이상 누범 강도의 법정형에서 사형이 제외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 개정 사항이 크지 않고, 종전의 권고 형량범위를 변경할 합리적인 이유가 발견되지 않음
-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죄책의 정도에 따라 권고 형량범위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유형 3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이므로 이를 상습·누범 강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다) 소수 의견 인 대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